제보하기 프로세스

제정일자	최종 수정일	개정차수
2022.05.23	2022.05.23	0

1. 목적

1.1 효성중공업은 임직원뿐 아니라 고객사, 협력사, 지역 사회 등 이해관계자 누구나 접근가능한 제보 채널의 운영을 통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부정한 침해를 근절하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1.2 본 프로세스의 목적은 비윤리적이거나 부적절한 관행 (법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사내규정 위반, 잠재적인 사기, 부패 또는 심각한 불법 행위 및 부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목격한 회사 직원이 상급자에게 알리지 않고 신원 공개 없이 "제보하기"를 통해 이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 내부 제보자의 신원이 제공된 경우에 내부 제보자는 효성중공업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 지침, 인권 방침 및 원칙에 기반하여 해당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한다.

1.3 이 프로세스는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보고 및 조사 (효성중공업 감사 규정)에 적용된다. 상황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시점과 관련 법률 및 당사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4 본 프로세스에 따른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보고 및 조사 과정에서 감사 규정 또는 개인정보보호 운영 기준에 명시된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가 처리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2. 적용 범위

2.1 효성중공업㈜ 임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등 직원은 아니지만 회사를 대신하는 회사나 사람(예. 하도급업체)에게 적용한다.

3. 제보 내용

3.1 아래 내용을 포함, 임직원의 규정 위반 행위, 금지 행위, 불법 행위 등 신고 및 제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보할 수 있다.

① 윤리강령 및 법규 위반

② 반부패 및 금품, 향응 요구 및 수수

③ 거래 불만사항 및 공정거래 위반

④ 직장 내 괴롭힘

⑤ 임직원 고충 사항

⑥ 아동/강제노동 및 인권 침해

⑦ 협력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⑧ 협력사 고충 사항

⑨ 회사 자산의 불법, 부당 사용

⑩ 문서, 계수의 조작 및 부정적 보고

⑪ 정보보안 침해

⑫ 기타 위법 및 부당행위 사항

4. 제보 방법

4.1 제보자는 아래 언급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

① 효성중공업㈜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https://www.hyosungheavyindustries.com/kr/report
② E-mail 을 통해 제보할 수 있음. esg-hi@hyosung.com
③ 제보 조치내용 확인에 대한 불만 사항은 E-mail 으로 보낼 수 있다. hyosung_hr@hyosung.com

5. 제보 및 처리 절차

5.1 제보자는 제보센터를 통해서 실명 또는 익명으로 부정비리 행위 등을 제보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제보 시 담당자의 이메일로 등록 안내 메일이 발송되고, 동시에 제보 등록 완료 메일이 제보자에게 발송된다.

5.2 제보센터 담당자는 제보내용을 신분 보호의 원칙하에 확인하고 조사 필요성 판단 후 이뤄지는 감사 과정은 당사 조사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조사 과정 前, 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조사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조치내역에 등록되고 제보자에게 안내 메일이 발송되며,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조치내역이 아닌 조사진행이 등록되고 안내 메일이 제보자에게 발송된다.

5.3 제보 담당 부서에서 직접 제보 내용을 객관적인 근거 확보 및 조사하고, 비리 확인 및 점검한다. 단, 심사과정 중 피험자는 조사, 증거를 보류, 파괴 또는 변조해서는 안되며 증인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지도하거나 협박하지 않는다. 그러한 행위는 징계 절차의 책임이 있다.

5.4 심사 책임자는 보호 공개를 받은 후 증거와 함께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보 담당 부서에 제출, 보고, 배포한다.

5.5 배포 후 개선 대책서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가 확정되었거나 필요에 따라 법적 조치를 진행 후 종결 처리한다.

5.6 제보자가 실명으로 제보하고 결과 피드백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회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치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발송한다. 익명제보자의 경우, 제보 센터 내 '익명 제보 확인하기' 를 통해서 조치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6. 제보자 보호 원칙

6.1 효성중공업은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 지침, 인권 방침 및 원칙에 기반하여 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한다.

6.2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책임의 감면 등을 통하여 제보자를 보호한다.

6.3 제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제보 정보도 철저히 보호한다.

6.4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의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분도 동일하게 보호하고 지원한다.

6.5 제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보자 및 관련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6.6 위법 및 비윤리 행위에 가담했으나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 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6.7 (추가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적용해야 함. 징계위원회는 특정 경우에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필요한 개인 정보만 (추가로) 처리해야한다.

6.8 징계위원회는 각 사례의 결과는 내부심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존 기간이 준수되도록 한다.

6.9 징계위원회는 접근권한 요구에 응할 때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6.10 개인정보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폐기 전까지 기밀이 철저히 보호되고 규정에 따라 복구 불가능하도록 폐기한다.